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선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455

발의연월일: 2024. 8. 30.

발 의 자:김선민·김준형·조 국

이해민 • 신장식 • 김재원

장종태 · 서왕진 · 김원이

박상혁 · 김남희 · 강경숙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가 증가하면서 민간산후조리원의 과도한 경쟁으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합리적인 비용으로 산후 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.

그러나 공공산후조리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출산가정이 많지 않음에 따라 다수의 출산가정에서 여전히 고가의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. 특히, 인구가 적은 지역의 경우 민간산후조리원조차도 충분히 개설되지 않아 출산 을 앞둔 가정의 산후조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.

이에 인구가 30만명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반드시 공공산후 조리원을 설치·운영하도록 하고, 국가가 이에 필요한 재정적·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산후조리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려는 것임(안 제15조의17제1항 단서 및 제2항 신설). 법률 제 호
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17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인구가 30만명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국가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재정적·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5조의17(지방자치단체의 산후	제15조의17(지방자치단체의 산후		
조리원 설치) ① 시·도지사	조리원 설치) ①		
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관			
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			
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			
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			
조리원(이하 이 조에서 "공공			
산후조리원"이라 한다)을 설치			
·운영할 수 있다. <u><단서 신</u>	<u>다만, 인구가 30</u>		
<u>설></u>	만명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의		
	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		
	<u>운영하여야 한다.</u>		
<u><신 설></u>	② 국가는 공공산후조리원의		
	설치・운영에 필요한 재정적・		
	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		
② (생략)	<u>③</u> (현행 제2항과 같음)		